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공원녹지과)

의안번호	제 460 호
제 출 자	임현주 의원 외 13명 (2025. 3. 28.)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20~29세대 공동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이 지원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바, 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공원녹지과

라. 입법예고 : 2025. 4. 3. ~ 2025. 4. 8.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¹⁾하고 있어, 20~29세대 공동주택과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13명 의원(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박영섭,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인순,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이 공동 발의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임.
- 우리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은 2021년 5월 임현주의원 대표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6.]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72호, 2021. 5. 6., 제정]

제5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비 규모는 2021년 5,400만원에서 2025년 3억원으로 6배²⁾ 증가하였음.

- 현행 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³⁾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연접해 있는 위험수목의 처리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임(다만, 우리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30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

연도	신청 건	지원 건	제외 건	제외사유	사업비(백만원)
2021	39	제거 55, 가지치기 66	-	-	54
2022	62	제거 130, 가지치기 173	-	-	130
2023	86	제거 347, 가지치기 80	-	-	200
2024	158	제거 226, 가지치기 152	14	신청자 취소, 사업예산 부족	200
합계	345	제거 760, 가지치기 471	14		584

3) 제2조(정의)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수가 20~29세대인 공동주택(지원대상 공동주택 84개)과 40년 이상 경과된 50세대 이하(지원대상 공동주택 6개)의 공동주택⁴⁾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세대수별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구간	사용년수별 공동주택 수				
	계	30년 미만	30~40년	40년 이상	기타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84	69	7	7	1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9	11	2	6	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7	15	1	1	0